

 대구탕·명태전·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704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05.17	준비중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3.24	



정 보 공 개 서

강연우 동태찌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강 연 우 동 태 찌 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49, 1층(안영동)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42-581-4103	팩스번호	042-581-060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 운영팀 042-581-410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1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강연우 동태찌개]이라 합니다)의 내용	2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2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3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1.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 시작한 날	4
2. [강연우 동태찌개] 연혁	4
3. [강연우 동태찌개] 업종	4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4
5. 바로 전 3년간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 수	5
6. [강연우 동태찌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5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5
8.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6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6
11. 가맹금 예치	6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8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8
3. 형(刑)의 선고	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9
2. 영업 중의 부담	12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6
1. 물품 구입 및 임차	17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8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8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9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22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23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28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29
9. 광고 및 판촉 활동	31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32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2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5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35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3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7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7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8
3. 경영활동 자문	38
4. 신용 제공 등 내역	38
5.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9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39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40
3. 교육·훈련의 주체	40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41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4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41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41
■ 별첨	4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강 연 우 동 태 찌 개	강 연 우 동 태 찌 개	대 전 광 역 시 중 구 대 둔 산 로 149, 1층(안 영 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7.03.02.	강연우	042-581-4103	042-581-0606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402-61-001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가맹본부 대표	강연우/ 강연우 동태찌개	강연우 동태찌개	대 전 광 역 시 중 구 대 둔 산 로 149, 1층(안 영 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연우	010-5409-4101		042-581-060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강연우 동태찌개]이라 합니다)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강연우 동태찌개	-
상 호	강연우 동태찌개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8-0181462 등록번호 : 40-1547671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1,074,711	-	-
2023년	-	-	-	1,188,983	-	-
2024년	-	-	-	1,148,957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연우	대표	2017.03.02. ~ 현재	강연우 동태찌개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 당 없 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5

- 임원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1명으로 입증합니다.
- 직원수는 “2024년 12월 기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입증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 외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강연우 동태찌개	제29류 (상표권)	출원 : 2018.12.26. 등록 : 2019.11.26.	출원 : 40-2018-0181462 등록 : 40-1547671	강연우	2029.11.26.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23.05.17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7.03.02.)

2. [강연우 동태찌개]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강연우 동태찌개	강연우 동태찌개	강연우	가맹사업 예정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49, 1층(안영동)

3. [강연우 동태찌개] 업종.

영업표지	업종	
강연우 동태찌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동태찌개, 대구탕, 코다리조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4	3	1	5	4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	1	1	-	1	1	-	1
울산	-	-	-	-	-	-	-	-	-
세종	-	-	-	1	1	-	1	1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해 당 없 음					
2023	0	3	0	0	0	3
2024	3	1	0	0	1	4

6. [강연우 동태찌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 외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4	297,439	7,161	392,255	7,459	198,898	6,626	-
서울	-	-	-	-	-	-	-	해당없음
부산	-	-	-	-	-	-	-	해당없음
대구	-	-	-	-	-	-	-	해당없음
인천	-	-	-	-	-	-	-	해당없음
광주	-	-	-	-	-	-	-	해당없음
대전	-	-	-	-	-	-	-	해당없음
울산	-	-	-	-	-	-	-	해당없음
세종	1	-	-	-	-	-	-	5곳미만
경기	-	-	-	-	-	-	-	해당없음
강원	-	-	-	-	-	-	-	해당없음
충북	1	-	-	-	-	-	-	5곳미만
충남	-	-	-	-	-	-	-	해당없음
전북	1	-	-	-	-	-	-	5곳미만
전남	-	-	-	-	-	-	-	해당없음
경북	-	-	-	-	-	-	-	해당없음
경남	-	-	-	-	-	-	-	해당없음
제주	1	-	-	-	-	-	-	5곳미만



-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1개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북지역: 청대점
- 가맹점사업자 중 매출액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산정불가능한 가맹점사업자는 제외하고 가맹점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지역: 익산점

8.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강연우 동태찌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4	52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	-	0	0	0	
판촉	-	-	0	0	0	
합계			0	0	0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관련 연간 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은행에 의한 예치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가맹본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중 빠른날)	계약체결일부터 최대 2개월
보험금액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② 가맹본부 경유 ↓ ③ 보험회사 접수 ↓ ④ 보험회사 조사 ↓ ⑤ 지급여부 결정 ↓ ⑥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보증보험 대체)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보증보험 대체)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일	교육시작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물품대금 미지급 등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이행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내인테리어 초도물품 등 기타비용 (기준: 132.2㎡ (40평)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6,500]	1912.5			
실내인테리어	(협력업체)	56,000	1,40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설비 주방집기	(협력업체)	10,000	25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협력업체)	5,000	125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초도물품	(협력업체)	5,500	137.5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POS설비	(협력업체)	렌탈형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별도사항	간판, 어닝, 철거, 샷시, 냉난방기, 소방설비, 전기승압, 화장실, 외장, 가스증설, 분전함, 수도설비인입공사, CCTV, 외부테라스, 도시가스온수기, 닥트, 컴퓨터, 각종 인허가비용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주방설비, 창고 및 숲실, 닥트, POS설비, 별도사항의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컨셉 및 품목, 규격 등에 맞게 시공 및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건에 맞는 업체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50천원(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인테리어는 매장규모 및 매장 현장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매장 또는 대형마트내, 백화점내 등 특수상권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제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제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최소점포기준 132.2㎡, 40평 이상)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정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220 (VAT포함)	익월 10일	해당사항 없음	소멸성 비용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업체자율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개선 비용	업체자율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구체적 내용은 VIII-2 참조			교육실수후 반환불가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구체적 내용은 V-8-1 참조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66]	설비업체와 협의	해당없음	소멸성 비용	사용량에 따라 변동
지연이자	가맹본부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부담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8.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VII.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점이후 교육비에 관하여는 “VIII-2.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강연우 동태찌개]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 당 없 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 당 없 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제재고 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 운영팀
서비스 관리	본사 직원의 방문으로 서비스 점검 실시	부정기	문의 : 운영팀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년 1회 이상 및 요청시	문의 : 운영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 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귀하가 운영하는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양도에 앞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기존계약의 승계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반면,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 (전화번호 안내, 포털사이트 등록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가맹 본부의 승인 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 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미사용 물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강연우 동태찌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물품구입 및 임차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원·부재료중 강제품목은 가맹본부 (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품목중 권장품목을 귀하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별도의 공지를 통해 재 안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 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강연우 동태찌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당사가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별첨의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리스트]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강연우 동태찌개]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외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미성년자	주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별첨의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리스트] 참조	권장가격	월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동태요리, 대구요리, 코다리조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	강연우 동태찌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거점사업장소재지가 속한 “동” 단위 행정구역 범위내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쇼핑센터,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 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조정 사유 발생 ↓ ② 당사 담당팀 검토 ↓ ③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⑤ 가맹점사업자 동의 ↓ ⑥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 의 가 있 는 경 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44%	56%	0%	0%

- 당사는 현재 온라인 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당사는 현재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은 0%로 기재하였습니다.
-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파일 첨부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에도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 음 의 의 무 를 준 수 하 지 않 거 나 조 건 을 수 락 하 지 않 을 경 우 입 니 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7조 2항 각호 1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가 귀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3항	32조 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32조 1항 2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32조 1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32조 1항	32조 1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조	32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9조	32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조 1항	32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2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개발·변경·판매·사용 하는 경우.	22조 2항	32조 1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메뉴 및 변경·수정·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2조 3항	32조 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6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3조 6항	32조 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서 필수강제(사입금지)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4조	32조 1항 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6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8조 6항	32조 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회계자료 및 보고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 하거나 보고 하는 경우.	29조	32조 1항 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31조를 위반하여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30조, 31조	32조 1항 1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6조 3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营业을 하는 경우.	36조 3항	32조 1항 15호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1항 16호를 위반하여,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불할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 이행된 경우.	26조 1항 16호	32조 1항 16호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1항 17호를 위반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6조 1항 17호	32조 1항 17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개설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2조 1항 1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5조	32조 1항 19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8조, 13조	32조 1항 20호

-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라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2조 3항 각호1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2조 2항 각호1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2조 4항 각호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시 가맹계약서의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①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② 당사 담당팀 검토 ↓ ③ 수정계약서(안) 작성 ↓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⑤ 가맹점사업자 동의 ↓ ⑥ 수정 완료	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②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①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② 정보공개서 제공 ↓ ③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④ 승인 여부 통지 ↓ ⑤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1개월 이내) ↓ ⑥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운영팀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외 제3자의 위탁 경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강연우 동태찌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제한기간	영업금지 업종	영업제한지역	영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후 1년	명태찌개, 대구탕, 코다리조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 운영팀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강연우 동태찌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강연우 동태찌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원칙 (권장 : 09:00~21:00)	최소 영업일 : 주 6일 이상 (제27조) (단, 특수상권은 해당상권 내 영업방침을 따름)	문의 : 운영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운영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해 수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Quality(메뉴의 표준화)	판매메뉴,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관리·감독 문의 : 운영팀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강연우 동태찌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전 체 행 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① 행사 계획 공고 ↓ ② 가맹점 부담액 제시 ③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④ 광고비 납부	1.대중매체 광고 등 광고에 따라 필요 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2.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반대시 미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 촉 전 체 행 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 동	가맹점사업자 30%이상 반대시 미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 부담		해 당 없 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을 인정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가맹점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관리 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3)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부담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아래의 금전을 지급 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도 및 승계,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내·외장 공사 관련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내	1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후 10일이내	200만원
계약체결 후 10일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300만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전 (단, 잔여개월수 5개월 초과시는 5개월로 정함)	월100만원 * 잔여 개월 수 (최대위약금은 500만원초과불가)

- 3)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매출액 대비 평균적 필수(강제)품목 소요량을 산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배상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10)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비밀유지의무) 및 제18조(경업금지의무)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할 위약벌로서의 금액은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으로 예정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IV.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 전의 부담 1)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7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최종 협의	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 협의/별도/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7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절차.

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선택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문확인서 수령 (14일 → 7일 단축희망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개선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①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②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③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④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당사는 [강연우 동태찌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POS사용, 입금방법, 매장관리, 재고관리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한국동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개점 후 교육.

당사는 효율적인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 교육	새로운 판매상품 교육, 종업원 관리교육, 필요시 전달교육 등	실습교육	1일(3~6h)	새로운 판매상품 출시 및 필요시
특별 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 교육	1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강연우 동태찌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30h~40h)	IV-1) 최초가맹금중 교육비 참조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당 7~8 시간 교육기준)
개점후 교육	수시교육	1일(3~6h)	기본이론교육, 새로운 판매상품 교육, 종업원 관리교육, 필요시 전달교육 등	교육비 없음 (단, 추가 실비발생 시에는 협의)
	특별교육	1일(3~6h)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특별교육에 따라 교육비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단독 1인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전	강연우 동태찌개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49, 1층(안영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년 9개월	직영점 사업개시일 2017.03.02.

※ 직영점 운영기간은 직영점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 산정하였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48,95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은 해당 직영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으로 입증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강제/권장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리스트

번호	상품	권장가격(원)
1	동태찌개 1인분	9,000
2	명태전	13,000
3	얼큰 대구탕 1인분	11,000
4	맑은 대구탕 1인분	11,000
5	곤이추가(200g)	4,000
6	알추가(200g)	5,000
7	코다리 조림 1인분	11,000

※ 본부의 영업정책에 따라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음

